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92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12.

주 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94,547,850원, 지방교육세 385,656,300원, 농어촌특별세 3,8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9.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본점을 '[redacted]시 [redacted]구 B에 있는 C빌딩 D호'(이하 '[redacted] 본점'이라 한다)로, 목적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으로, 대표자 사내이사를 'E'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 17. 본점을 '[redacted]시 F, 2층'(이하 '[redacted] 본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2011. 8. 19. 본점을 [redacted] 본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9. 1. 주식회사 G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H 대 1,87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3억 7,75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한 취득세 1,204,763,370원, 지방교육세 120,476,330원, 농어촌특별세 60,238,160원 등 합계 1,385,477,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redacted]구에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기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2,094,547,850원, 지방교육세 385,656,300원, 농어촌특별세 3,859,910원 등 합계 2,484,064,0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대도시 내에 있는 '[redacted] [redacted]구 I빌딩 5층'(이하 'I 사무소'라 한다)이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대도시 내 등록된 사업장에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대도시 내에 있지 않은 [redacted] 본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을 뿐 대도시 내에 있는 I 사무소에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와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각 고지세액 중 본세와 가산세가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과세표준 · 세율 등 세액산출의 근거도 전혀 기재되어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실질적 업무는 I 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redacted] 본점은 원고의 대표자인 E이 또 다른 대표자로 있는 J 주식회사가 사용해온 사업장에 불과하다. 원고는 본점을 대도시 내인 I 사무소로 이전하였고,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 및 그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회사명	설립연원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	추진사업	비고
주식회사 A	2011. 8. 9.	[redacted] 본점(2011. 8. 9. ~ 2011. 8. 1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오피스텔 등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redacted] 본점(2011. 8. 17. ~ 현재)		
J 주식회사	2008. 6. 26.	[redacted]시 K, 1층(2008. 6. 26. ~ 2015. 6. 10.)	[redacted] M 도시개발사업	2014. 11. 19. N 주식회사[1]에서 상호 변경
		[redacted]시 L, 2층(2015. 6. 10. ~ 현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주식회사 O	2011. 6. 9.	I 사무소(2011. 6. 9. ~ 2012. 6. 1.까지) [redacted] [redacted]구 P빌딩 12층(이하 'P 사무소'라 한다, 2012. 6. 1. ~ 현재)	[redacted] 공동주택 신축사업	2015. 5. 29. 주식회사 Q로 상호 변경

2) 전대차 및 임대차 계약 등

가) 원고는 [redacted] 본점에 관하여, 2011. 8. 17. [redacted] 본점의 임차인이었던 J 주식회사(이하 위 표 기재 각 회사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 임대인 R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차임 월 5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는 I 사무소를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5. P 사무소를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8,523,3,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2. 6. 1. 시설 일부를 P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3) 원고는 2011. 8. 17.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0. 12. T은행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1) 원고는 변경 전 회사명이 주식회사 Q(갑 제37호증)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는 E을 감사로, 안산시 단원구 B, U호를 본점으로 하여 2006. 3. 16. 설립되었다가 2016. 12. 5. 해산간주된 회사로 J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제19조에는 차주인 원고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주소: I 사무소, 전화번호: V, 참조: 개발사업부 W 차장'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S 등과 2011. 8. 2.부터 2011. 9. 30.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2011. 8. 2.부터 2011. 8. 16.까지는 S 본사에서, 2011. 8. 23.부터 2011. 9. 30.까지는 [redacted] 본점에서 각 회의를 진행하였다.

5) 원고가 [redacted] 본점에서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는 'X'인데, 이는 기존 [redacted] 본점의 임차인이었던 J이 이전에 사용해오던 전화번호이다. 또한 2010. 8. 및 2012. 8.을 기준으로 [redacted] 본점 출입구에는 'Y 조합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6) 원고는 2011. 11. 23. 주식회사 Z과 사이에 경비대상처를 I 사무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경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가 2012. 4. 10.경 직원 채용을 위해 인터넷사이트(AA)에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주소가 I 사무소로, 전화번호가 AB(I 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1. 12. 7. 다른 구직 인터넷사이트(AC)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주소를 I 사무소로 입력하였다.

8) 원고는 2011. 8. 25. 및 2011. 9. 16. AD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redacted] 본점으로 배송받았고, 2011. 9. 1.부터 2011. 9. 30.까지 [redacted] 본점 인근에서 식대 등으로 582,700원(복리후생비)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2011. 10. 7.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AE'로부터 합계 2,212,420원 상당의 사무용품 등을 I 사무소로 주문하여 배송받았고(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1. 10. 13.경까지 공급받은 사무용품 가격은 합계 158,600원이다), 2011. 10. 13.경부터는 I 사무소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9) 원고는 2011. 11.분 및 2011. 12.분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령지를 I 사무소로 기재하였고, 2011. 10. 10. [redacted]공단, [redacted]공단에, 2011. 10. 11. [redacted]공단에 각 최초 사업장가입 신고(신청) 당시 우편물 수령지를 I 사무소로, 전화번호를 V 및 AF로 각 기재하였으며, 2011. 10. 13. 취득세 신고 당시 전화번호를 V로, 2012. 3. 27. 법인세 신고 당시 전화번호를 AG으로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내지 21, 23, 28 내지 30, 36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4, 20, 21,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redacted]공단 [redacted]본부장, [redacted]공단 [redacted]지사장, [redacted]공단 [redacted]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계 법령 규정의 해석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문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redacted]시 외의 지역에서 [redacted]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으로 등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

다) 또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정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은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며,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한다. 본점의 전입은 주된 영업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업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상법 제37조 제1항), 본점이 이전한 경우 2주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본점의 전입은 등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본점의 이전등기는 본점 전입의 성립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법인 본점의 전입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원고의 본점이 I 사무소로 이전(원고의 본점이 대도시로 전입)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본점으로 등기된 [redacted] 본점은 E이 대표자로 있는 J의 사무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 E은 I 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O를 설립한 사실, 원고가 T은행 등과 사이에 체결한 2011. 10. 12.자 대출약정을 비롯한 다수의 계약서 및 신청서 등에 송달장소로 I 사무소를, 전화번호로 I 사무소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11. 11. 23. 주식회사 Z과 사이에 경비대상처를 I 사무소로 한 시스템경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1. 10.경부터 I 사무소 주변에서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 26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1. 10. 13. 이전에 원고의 본점이 I 사무소로 이전되어 I 사무소가 원고의 영업에 관하여 총괄적 지휘를 한 주된 영업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① 원고는 2011. 8. 23., 2011. 8. 25., 2011. 9. 1., 2011. 9. 7., 2011. 9. 30.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S과 [redacted] 본점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는 [redacted] 본점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1. 9. 7.자 회의록에는 원고가 [redacted]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회의 당시 이미 원고가 서울 내에 있는 I 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2011. 8. 25. AD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redacted] 본점으로 배송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물품 구입비나 복리후생비 등 [redacted] 본점의 인적 · 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redacted] 본점으로 전입하기 전인 2010. 8.경 및 전입 후인 2012. 8.경 [redacted] 본점 소재지 건물 2층 출입구에 각 'Y 조합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redacted] 본점에서 사용한 전화번호는 J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전화번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에 비추어 볼 때 [redacted] 본점은 J의 사무소였을 뿐 원고의 본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redacted] 본점에 관하여 J과 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각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원고의 사업 수행에 위 간판의 철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위 각 간판의 위치가 일부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 위 기간 사이에 다른 간판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redacted] 본점을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와 O의 등기이사가 동일(E, AI, AJ)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AI, AK(각 S과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다), W(2011. 10. 12.자 대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등은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O와 J의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redacted] 본점이 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은 원고의 등기이사이고, W은 2011. 1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자(을 제9호증)이며, E이 대표로 있는 각 회사의 관계, 회사의 규모, 추진 사업의 성격 등을 볼 때 일부 직원이 소속에 관계 없이 각 회사의 업무를 담당해온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본점이 [redacted] 본점이 아닌 I 사무소라고 인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1. 10. 13.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1. 10. 13. 이전에 I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 중 상당 부분[위 4. 가. 6), 7) 및 8), 9)의 일부]은 2011. 10. 13.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1. 10. 13. 이전에 I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1. 10. 13. 직후부터 I 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조세정책의 하나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유인책 내지 억지책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조세정책에 순응하여 과세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의무자의 노력은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위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⑦ 2011. 10. 12.자 대출약정서, 2011. 10. 10.경의 [redacted]공단,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redacted]공단, [redacted]공단 최초 가입 신고(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에 우편물 송달장소로 I 사무소가, 전화번호로 I 사무소 전화번호가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인 E이 여러 회사를 통해 각기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통지장소를 I 사무소로 해 두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원고가 2011. 8. 9. 설립된 이후 2011. 9. 7.경 이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redacted]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redacted]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본점을 I 사무소([redacted] 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이었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1. 10. 10.경 작성된 여러 서류의 우편물 송달장소나 전화번호가 I 사무소로 기재된 것은 곧 있을 [redacted] 사무소 설치 또는 본점 이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의 본점이 2011. 10. 10.경 이미 I 사무소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원고가 2015. 4. 9. I 사무소 건물의 관리소장인 AH을 상대로 방문조사하여 작성한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사업장 입주현황 확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2호증)에 따르면, AH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I 사무소에 O가 아닌 원고가 입주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A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진술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 I 사무소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고, 3년여가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측 직원이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공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I 사무소에 실제 입주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⑨ O는 그 소속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2011. 10. 20. AL 등과 사이에 토지계약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원고는 O가 소속 직원을 두는 대신 외부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4. 10. 20. [redacted]시장 등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실제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I 사무소를 원고의 본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 실질적으로 본점을 대도시 내에 있는 I 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1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